



ESG

1

3

문서번호

DIS-ESG-S04

이해상충방지 업무지침

제 정

2022.10.01

개정번호

0

이해상충방지 업무지침

제 1 조 목적

이 규정은 윤리규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업, 겸직 등 회사와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 및 회사의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이용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적용범위

이 규정은 국내외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,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등 제 3 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준수가 권장된다.

제 3 조 경업금지

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회사, 조합 등 단체를 설립하여 직·간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행위
2. 제 1 호에서 정한 회사나 단체 등의 영업활동이나 판촉활동 등에 자신의 성명, 회사 내 직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위

제 4 조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회사에서 수행하는 직무 또는 직위로 인하여 사업기회에 대한 제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
2. 거래업체 또는 경쟁업체로부터 사업기회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경우
3.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회사 내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기회를 알게 된 경우
4. 사업기회가 회사의 현재 수행 사업 또는 장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

제 5 조 거래상대방의 선정 등

- ① 거래상대방의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의 결정은 품질, 가격, 납기 및 배송 일정 준수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,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혈연, 학연, 종교 등 친분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제 1 항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의 선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매수 등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조 내부정보 부당이용 금지



DONG WON

ESG

이해상충방지 업무지침

2

3

문서번호

DIS-ESG-S04

제 정

2022.10.01

개정번호

0

- ①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얻게 된 미공개중요정보(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)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기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제 1 항의 미공개중요정보는 회사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, 자회사 등 계열회사, 공급업체, 하도급업체, 협력업체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얻게 된 다른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.
- ③ 제 1 항은 금융당국에 신고되거나 신문·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것으로 법령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.

제 7 조 준수의무와 책임

-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,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임직원은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신고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8 조 문의사항 협의

임직원은 이 규정의 의미, 해석 또는 특정 행위에 대한 허용□금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규범 주관부서에 문의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 1. 이 규정은 2022. 10. 1 부터 시행한다.